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80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송옥주 · 전종덕 · 윤준병
서미화 · 홍기원 · 박 정
이수진 · 전용기 · 한민수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법」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중량 등 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상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하여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운반할 것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우며, 과적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 구조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과적 화물차’로 인한 사건·사

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에 한정하여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주에 대한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는 요구 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특정 조건 성립 시 그 위반행위는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여, 화물 운송 구조로부터 발생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화물자동차 과적 운행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8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요구한 경우

16. 제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제26조제4항 중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을 “통보하여서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18항까지”를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 또는 요구한 경우

12. 제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제28조 전단 중 “제18항까지”를 “제17항까지”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화물의 적재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의 운송을 위탁, 주선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화물 운송의 위탁, 주선 또는 요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차량 운행의 제한 기준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적재중량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행위는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 또는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물의 종류·중량 및 운임 등을 기재한 화물위탁증 또는 운송장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화물운송계약의 상대방인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반복적·상습적으로 위반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70조제2항제23호의3을 제23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의3 및 제2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3.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의 운송을 위탁, 주선 또는 요구한 자

23의4. 제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⑱ (생략) <u>⑲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⑳ ~ ㉔ (생략)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⑱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u><신 설></u>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 ----- ----- ----- ----- ----- - .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의 운</u>

<신 설>

②・③ (생 략)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⑦ (생 략)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송을 위탁 또는 요구한 경우

16. 제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통보하여서
는-----.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

(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9. (생략)

<신설>

<신설>

② (생략)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제10항·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

-----제17항까지-----

8.·9. (현행과 같음)

11.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 또는 요구한 경우

12. 제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준용 규정) -----

-----제17항까지-----

다.

<신 설>

-----.

제58조의2(화물의 적재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의 운송을 위탁, 주선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화물 운송의 위탁, 주선 또는 요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차량 운행의 제한 기준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적재중량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행위는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제7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3의2. (생략)

<신설>

<신설>

23의3. (생략)

운전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 또는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물의 종류·중량 및 운임 등을 기재한 화물위탁증 또는 운송장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화물운송계약의 상대방인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반복적·상습적으로 위반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3의2. (현행과 같음)

23의3.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의 운송을 위탁, 주선 또는 요구한 자

23의4. 제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23의5. (현행 제23호의3과 같

24. ~ 27. (생략) ③ (생략)	음) 24. ~ 2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